

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(안)

(제 1편 선급등록 및 검사)

(외부의견조회 용)

April 2020.



- 주요 개정 내용 -

(1) 2020.06.01일자 시행사항 (검사신청일 기준)

● Coronavirus Disease(COVID-19)와 같은 Pandemic관련 불가항력 요건 개정

(1) 2020.06.01일자 시행사항
(검사신청일 기준)

현행	개정안	개정 이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장 선급등록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~ 제 8 절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9 절 선급정지, 탈급 및 재등록</p> <p>901. 선급정지 및 회복</p> <p>1. ~ 5. <생략></p> <p>6. 선박소유자 또는 우리 선급의 통제한계를 정당하게 넘어서는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하여 선박이 허용된 기간의 만료시점에 기한이 지난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항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우리 선급은 다음의 조건으로 합의된 양하항까지의 직항을 선급유지상태로 허용할 수 있다. 또한 필요한 경우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합의된 항구까지의 평형수항해를 허용할 수 있다. 【지침 참조】</p> <p>(1) 선박기록의 검토</p> <p>(2) 현재 항구에서 예상치 못하게 검사원이 본선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도착항에서 지정된 검사 및/또는 기한이 지난 검사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검사 (2020)</p> <p>(3) 선박이 양하항까지의 단일항해 및 필요시 수리시설까지의 연이은 평형수항해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우리 선급의 만족(현재 항구에서 예상치 못하게 검사원이 본선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선장은 선박이 가장 가까운 도착항까지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)</p> <p><새롭게 추가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장 선급등록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~ 제 2 절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9 절 선급정지, 탈급 및 재등록</p> <p>901. 선급정지 및 회복</p> <p>1. ~ 5. <현행과 동일></p> <p>6. 불가항력(force majeure) (2020) 선박소유자 또는 우리 선급의 통제한계를 정당하게 넘어서는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하여 선박이 허용된 기간의 만료시점에 기한이 지난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항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우리 선급은 다음의 조건으로 합의된 양하항까지의 직항을 선급유지상태로 허용할 수 있다. 또한 필요한 경우 검사를 완료 할 수 있는 합의된 항구까지의 평형수항해를 허용할 수 있다. 【지침 참조】</p> <p>(1) 선박기록의 검토</p> <p>(2) 현재 항구에서 예상치 못하게 검사원이 본선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도착항에서 지정된 검사 및/또는 기한이 지난 검사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검사 (2020)</p> <p>(3) 선박이 양하항까지의 단일항해 및 필요시 수리시설까지의 연이은 평형수항해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우리 선급의 만족(현재 항구에서 예상치 못하게 검사원이 본선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선장은 선박이 가장 가까운 도착항까지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)</p> <p><u>Pandemic(예, COVID-19)과 같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하여 선박이 허용된 기간의 만료시점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, 우리 선급은 다음의 조건으로 합의된 기한까지 선급유지상태를 허용할 수 있다. (2020)</u></p> <p><u>(1) 기국의 승인(해당되는 경우)</u></p> <p><u>(2) 선박기록의 검토</u></p> <p><u>(3) 검사원이 정당하게 참석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첫 번째 도착항에서 지정된 검사 및/또는 기한이 지난 검사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검사</u></p> <p><u>(4) 선박의 합의된 연기 기간 동안 만족스럽게 선급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는 선박소유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검토(여기서, 우리 선급은 원격검사나 수용 가능한 사진, 비디오 또는 기타 구조물/장비 상태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)</u></p> <p><u>(5) 선박이 합의된 기간 동안 우리 선급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, 만족스럽게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임을 알리는 선장의 진술서</u></p>	<p>* 국제업무팀의 개정요청에 의거 (By E-mail) : COVID-19 Pandemic 관련하여 불가항력 요건 일부 개정 (KR 검사기술심의 위원회 결과 및 LR 규칙 참조)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만일 이러한 불가항력으로 이미 선급이 자동적으로 정지된 경우 상기조건으로 선급이 회복될 수 있다.</p> <p>여기서 ‘불가항력(force majeure)’이라 함은 선박의 손상; 사람의 접근이나 이동의 권리에 대한 정부의 제한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하게 우리 선급이 본선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; 예상치 못하게 항구에서의 지연 또는 비정상적인 장기간의 악천후, 노동쟁의 또는 시민항쟁으로 인하여 양하를 할 수 없는 경우; 전쟁;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을 말한다.</p>	<p>만일 이러한 불가항력으로 이미 선급이 자동적으로 정지된 경우 상기조건으로 선급이 회복될 수 있다.</p> <p>여기서 ‘불가항력(force majeure)’이라 함은 선박의 손상; 사람의 접근이나 이동의 권리에 대한 정부의 제한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하게 우리 선급이 본선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; 예상치 못하게 항구에서의 지연 또는 비정상적인 장기간의 악천후, 노동쟁의 또는 시민항쟁으로 인하여 양하를 할 수 없는 경우; 전쟁;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(예, COVID-19와 같은 Pandemic)을 말한다. <u>(2020)</u></p>	<p>* 국제업무팀의 개정요청에 의거 (By E-mail) : COVID-19 Pandemic 관련하여 불가항력 요건 일부 개정 (KR 검사기술심의 위원회 결과 및 LR 규칙 참조)</p>